

# 전북외국어고등학교

##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생생활규정)

전부개정 2023. 12. 18.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정 적용의 원칙)** 학생의 인권은 학생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권리이며,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아니 되고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전라북도 학생 인권조례」에 의거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 제3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③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 제4조(학생 인권 보호 원칙)

- ①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 ② 학생의 인권 관련의 제·개정 시에는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 제5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습에 관한 권리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3.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안전에 대한 권리
7. 휴식을 취할 권리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9. 사생활의 자유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11. 정보에 관한 권리
12. 양심·종교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14. 자치활동의 권리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6.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7. 복지에 관한 권리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20. 급식에 대한 권리
21. 건강에 관한 권리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3.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24. 그 밖의 보편타당한 권리

**제6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5. 학교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6. 학생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제7조(기본행동)**

-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②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표현하는 복장이나 장식물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 ⑥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8조(수업 태도)

- ①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 ② 학생은 교원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 ④ 학생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원에게 허락을 받는다.
- 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⑥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⑦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 ⑧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에서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⑨ 쾌적한 수업 및 학급 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 정돈 등에 관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 ⑩ 수업 중 껌을 씹거나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다.
- ⑪ 수업 시간에 교육 목적 이외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 제9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내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

- ②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
- ④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10조(시설 이용과 환경)

-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 ② 학생은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③ 학생은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 ④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⑤ 소화기, 배전반 등 위험 소지가 있는 것에는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 ⑥ 학생들은 교내에 낙서를 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개인 소유물)

-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12조(소지 · 사용 금지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그 밖에 소지 · 사용을 금지하는 물품

가. 소지 금지 물품

-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 5) 인권침해, 혐오표현,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 8)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약물 등

나.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 제13조(소지 물품 조사)

- ① 제12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 · 특정 학년 · 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 · 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 ②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④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 제14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과 같다.

#### 제15조(전자기기 사용)

- ①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 ③ 수업 중 휴대전화기, 각종 전자기기 사용으로 적발되면 보호자에게 알리고 쉬는 시간에 돌려준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16조(정보통신 윤리)

-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학생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17조(자기주도학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쓴다. 필독 도서와 권장 도서를 우선적으로 읽는다.

- ① 학생은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 교과 이외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생의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18조(양성평등)**

- ①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②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③ 상대방의 일방적인 스토킹이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④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 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⑤ 남녀고용평등법, 남녀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의 교육을 통해 외모, 언어적, 육체적, 시각적 유형의 언행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성교육을 통해 충분히 인식한다.
- ⑥ 성희롱 및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정신적,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불가능할 경우 학부모 및 담임교사는 학교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용의복장)** 노출이 심한 경우 지도교사가 교육할 수 있다.

## 제20조(교복 규정)교복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동복

1. 상의 : 흰색 바탕 교복 셔츠에 군청색 넥타이를 매고 노란색 조끼와 군청색 카디건을 입고 갈색 겉옷을 착용한다.
2. 하의 : 갈색 치마나 바지를 혼용할 수 있으며 치마의 길이는 임의로 수정하지 않는다.

### ② 춘추복

남·여 학생 모두 동복 착용 상태에서 상의 겉옷만 탈의한다.

- ③ 임의로 교복의 모양을 변형해서는 안 되며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을 갖춘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예외로 할 수 있다.
- ④ 동복, 춘추복, 생활복 착용 기간은 기상 상황과 본인의 체감온도에 맞게 착용한다.

## 제21조(기타 교내생활)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인성생활안전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 교사가 입장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이 공간을 활용할 때(신고)
  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 ② 외출하는 학생은 담임교사를 통해 외출증을 발급받은 후 외출한다.
- ③ 학교가 정한 자기주도 학습 시간에는 돌아다니는 것을 삼가한다.
- ④ 급식 이외의 외부 음식물(간식)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지도(담임, 동아리)교사 입회하에 외부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는 것은 가능하다.

## 제22조(자치활동)

- 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고,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학급 학생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 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들은 학생 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학교는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 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⑤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의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자치회 규정에 따른다.
- ⑦ 학생자치회 규정의 제·개정은 학생대의원회에서 한다.

**제23조(교외생활)** 학생의 교외 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여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하고자 할 때는 학교장에 신고해야 한다.
- ③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④ 외출 시에는 부모님 및 담당 교사가 외출 사유와 시간, 대략적인 장소를 알 수 있게 한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활동에 참여할 때는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다.
- ⑥ 교통 규칙, 공중도덕을 잘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물질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유해업소(단란주점, 호프집, 비디오방, 나이트클럽, 소주방 등) 출입이나 불법 취학교에 업을 금지한다.
- ⑨ 동아리 활동은 신고하고 활동한다.
- ⑩ 학생의 가출과 폭력, 약물 복용 등 형사사건에 대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학부모는 즉시 담임과 인성생활부에 알려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24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 생활이 되도록 교육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린 후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 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 생활 및 교우관계
- ③ 학생(자녀)의 이상 행동 및 일탈행위

**제2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 · 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 · 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 · 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 **제26조(생활지도의 방식)**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9조에 따른 조언 · 제10조에 따른 상담 · 제11조에 따른 주의 · 제12조에 따른 훈육 · 제13조에 따른 훈계 등의 방식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의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고시 제12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조치에 관한 장소 ·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제59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 **제4장 학생포상**

**제27조(학생포상)** 학교의 장은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봉사활동 실적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타의 모범이 된 자, 공로가 있는 자, 특기가 뛰어난 자, 학교의 명예를 빛낸 자 등에 대하여 추천에 의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① 개인표창
- 1. 품행이 바르고 선행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 표창을 실시하고, 상급 기관장

의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2. 특별한 선행, 효행, 봉사 등의 사례가 뚜렷한 학생에게는 표창할 수 있다.
- ② 학급표창 : 학급관리, 출결, 환경미화 등 제 수상 관련 항목을 점수화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28조(종류)** 다음의 각 항의 시상을 관련 부서에서 주관하여 시상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 ① 학습발달분야 - 학력우수상 등
- ② 특별활동분야 - 기능상, 체육상, 예능상 등
- ③ 행동분야 - 선행상, 봉사상, 준법상 등
- ④ 특별상 - 학교장상, 졸업대외상 등
- ⑤ 기타 위 각 항 이외의 부문에서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도 수시로 시상할 수 있다.

**제29조(시기 및 시상 인원)**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 말, 5월 청소년의 달, 11월 학생의 날,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하고 연간 시상 총 인원은 전체 학생의 20% 이내로 한다.

**제30조(특별활동 및 행동분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담임 및 담당 교사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 ① 선행상 : 유실물이나 금품을 습득하여 주인을 찾아 주거나 신고하여 타의 모범이 된 학생, 기타 예절이 바르고 품행이 방정하여 교내·외에서 선행의 사실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② 봉사상 : 재학 중 실장·부실장을 하면서 우수학급 표창을 받은 학생, 학교 발전을 위한 공적 업무 수행에 봉사정신을 발휘한 학생, 불우 학우 및 재난에 처한 사람을 도와 상부상조의 기품을 조성한 학생, 봉사정신이 강하여 남의 어려운 일을 헌신적으로 돌보아준 행적이 뚜렷한 학생에게 수여한다.
- ③ 준법상 : 기숙사 생활규정과 학생생활규정을 가장 잘 준수하는 학생에게 수여한다.

**제31조(특별상)**

- ①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학급 또는 학생에게 수여할 수 있다.
- ② 졸업 대외상은 교무기획부 별도 규정에 준하여 졸업식에 수여한다.

#### 제32조(외부로부터의 시상)

- ① 외부 기관 및 단체에서 수상 대상자를 지정한 후 추천을 요구할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추천할 수 있다.
- ②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추천을 요구할 때는 대상자를 선발한 다음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 해당 기관 및 단체에 알린다.

#### 제33조(시상의 절차)

- ① 선발 심사는 주관 부서에서 시행하되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
- ② 평소 외부 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대회의 참가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대외에서 수상한 상장 및 상품은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상한다.

#### 제34조(추천의 제한)당해 학기에 징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은 표창 상신을 제한 할 수 있다.

### 제5장 생활교육

#### 제35조(안전교육)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③ 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 ⑤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 제36조(진로교육)학생에 대한 진로 교육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진로 목표를 바르게 정립하고 학생들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갖도록 한다.

- ②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에게 진로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 ③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한다.
- ④ 필요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심성 훈련)을 실시한다.
- ⑤ 담당 교사는 진로 교육을 실시한다. (직장 예절, 면접 방법, 전화 예절, 안전 관리, 기본 생활 습관 등)
- ⑥ 직업 관련 표준화 검사를 실시하여 진로 교육에 활용한다.
- ⑦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제37조(무단결석 · 가출 예방교육)** 무단결석 · 가출 예방 교육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학년 초에 무단결석 및 가출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한다.
- ② 학년 초 담임교사와 학생·학부모 면담을 실시한다.
- ③ 위기 가정 학생은 지속적으로 상담·교육한다.
- ④ 결석생의 결석 사유를 즉시 파악하고 학부모와 연계하여 교육한다.
- ⑤ 적성과 취미에 맞는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 교육한다.
- ⑥ 가출 후 귀가하여 출석한 학생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상담 및 교육한다.

**제38조(학생 자살 예방교육)** 학생 자살 예방 교육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한다.

- ①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 교육을 실시한다.
- ② 학생들이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③ 관찰·상담 활동을 강화하여 자살 징후를 조기 발견하는데 노력한다.

**제39조(약물 오 · 남용 예방교육)** 약물 오 · 남용 예방 교육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한다.

- ① 학교장 훈화, 담임 훈화,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해 교육한다.

- ② 피해 예방을 위한 계도 교육(VTR 자료 활용) 및 홍보(게시판, 학교신문, 사진, 포스터, 표어 등)를 강화한다.
- ③ 가정통신문을 통한 가정 연계 교육으로 학부모를 계도한다.
- ④ 상습 복용자를 파악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과 연계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병원 치료를 받게 한다.

**제40조(음주·흡연 예방교육)** 음주·흡연 예방 교육은 다음 각 항을 기준으로 하여 교육한다.

- ① 음주·흡연 인구가 저연령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에 유의하여 교육한다.
- ② 교내 및 교외에서 흡연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 ③ 교내 순찰 강화를 통한 예방에 주력한다.
- ④ 교육 자료 활용을 통하여 충분히 홍보하고 경각심을 갖게 한다.
- ⑤ 흡연 학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 계획을 세워 교육한다.
  - 1. 흡연 적발 시 담임교사가 훈계 교육하고 학부모를 소환하여 흡연 사실을 알린다.
  - 2. 흡연 학생에 대해서는 인성생활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교육한다.

**제41조(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를 함양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건강한 남성·여성으로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며 살아간다. 폭력 현상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통해 폭력 민감성을 제고하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과 가족관계를 유지한다.

##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42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

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 대상 학생 선발 등 학생 포상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 제4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위원은 인성생활안전부장, 생활교육 담당 교사, 교무기획부장, 각 학년부장, 상담 교사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특정 학생에 대한 징계 대책을 협의할 때는 그 학생의 담임교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하게 한다.

#### 제44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성과 반대가 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심의한다. (단, 특별교육 이수 및 퇴학처분 사안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⑥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징계 사안에 대해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 ⑦ 의결된 사안은 최종 학교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 ⑧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45조(위원의 제척 · 기피 및 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제46조(기능)

-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고 시행한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교직원회의에 회부할 수 있다. 교직원 심의 · 의결 사항에 대하여는 교직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동수일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무효로 한다.

#### 제47조(규정의 범위)본 규정은 학생의 개인 생활을 보장하면서, 학교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행동 양식을 규정한 것이다.

## 제6장 학생 징계 규정

제48조(징계 원칙) 학생 징계 원칙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생 교육은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② 학생 교육은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 교육은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여 실시한다.
- ④ 교육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고사 기간은 교육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49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폭력

제50조(교사의 권한) 학생 징계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
4. 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51조(훈계, 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

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2.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교육
  3. 훼손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4. 학부모 통보 및 상담
  5.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 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 제52조(징계의 원칙)

-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②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 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③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 것을 취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할 때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반성하고 돌아킬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⑤ 학교의 장은 징계할 때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교육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⑥ 징계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제53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안설명)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상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하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 제54조(학생 징계의 종류와 기간)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교 내의 봉사는 7일 이내의 기간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며, 수업 참여 여부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 ② 사회봉사는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하며, 해당 기관의 일정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③ 특별교육 이수 기간은 해당 기관의 일정 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퇴학처분

#### 제55조(징계의 방법 및 진술기회 부여)

- ① “학교 내의 봉사”는 학생을 등교시켜 인성생활안전부 또는 학년부의 교육을 받아 학교 내에서 환경정리, 도서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한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학생 설정을 고려하여 내용, 방법, 기간, 봉사활동 기관의 선정 등을 심의하여 징계 학생의 부모와 협의,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 시행한다. 사회봉사 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교육과정과 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하거나 필요한 경우 위 2의 경우와 같은 사회봉사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 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을 이수한다.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특별교육 이수는 학부모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회봉사 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는 해당 학생이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 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 등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생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퇴학 처분”을 하기 전에 학교장은 퇴학 전에 가정학습을 명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가정학습 기간 중 개전의 정이 뚜렷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퇴학처분을 해제하고 차단계의 징계 조치 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한편으로 가정학습 기간 중 사안 재발생 시 퇴학

처분할 수 있다.

- ⑥ 징계 학생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 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징계 심의과정에 학부모 및 학생의 귀책 사유(통신 두절 및 진술 거부 등)로 인한 의견 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고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 ⑦ 학생의 징계 사항은 기록하여 보관하고 학생 교육에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제56조(심의 확정)**학생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제53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안 설명)에 근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단,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전체 교직원 회의에 회부하여 확정지을 수 있다.

**제57조(징계내용 통보 및 이의신청)**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즉시 통보하고 협조하도록 요청한다. 단 퇴학조치를 제외한 징계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 교직원 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확정할 수 있다.

**제58조(재심청구)**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학교에서는 재심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기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퇴학조치 대상자가 원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퇴학조치 대상자에게 재심청구 양식도 함께 제시(발송)해야 한다.

**제59조(징계 유보 및 징계 경감·단축)**징계 조치 이행 중인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되면 시험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하며,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교육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 교사의 책임 교육을 전제로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징계 조치 이행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 사안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60조(징계 해제)** 학교장은 징계 조치 이행 중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징계 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학생생활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징계 해제 전에 인성생활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 받은 기간의 1/2 내에서 징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1조(징계 세부사항)** 징계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학교 내의 봉사에 해당하는 사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업 시간과 자율학습 시간에 학습 태도 불량 및 무단 이석으로 3회 이상 주의를 받은 학생
2. 무단결석을 3일 이상(3~5일) 계속한 학생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각, 조퇴, 결과가 3회 이상인 학생
4. 사행 행위 및 인터넷 도박을 한 학생
5. 고사 중 부정행위 학생(해당 과목은 0점으로 처리하고 고사 종료 후 처벌함)
6. 타인의 물품이나 금전을 절취한 학생
7.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출입한 학생
8. 학교 단체 행사에 이유 없이 불참한 학생
9. 기숙사 무단출입 및 학교 무단 이탈 학생
10. 사이버(인터넷)상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모략한 학생
11.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 또는 타인을 위협할 목적으로 흥기를 소지한 학생
12. 과도한 신체접촉(허리감싸기, 포옹, 입맞춤, 무릎 위에 앗기, 교사의 허락없이 교실을 제외한 밀폐된 공간에 둘만 있기, 키스 등)으로 풍기문란을 조성한 학생
13. 교사의 정당한 지시 및 교육에 불응하여 타인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적법한 권한을 침해한 경우로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14. 허가받지 않은 음식물(간식)을 반입하여 2회 이상 주의를 받은 학생
15. 이상의 각 항에 상응한 행위를 한 학생

## ② 사회봉사

1. 제61조 1항 각호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재범한 학생
2. 사행 행위를 한 학생
3. 안정제, 환각제, 대마초, 본드 등 마약류 복용 학생
4. 고의적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아니한 학생
5. 고의로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손상을 입혀 물의를 야기한 학생
6. 무단결석이 계속 6일 이상이거나 조퇴, 외출, 지각, 결과가 잦은 학생
7.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 또는 타인을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학생
8. 흡연을 위한 성냥, 라이터, 담배(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 음주한 학생
9. 불량서적 및 외설물을 교내에서 소지, 탐독 및 회람 시청한 학생
10. 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11. 기숙사 무단 이탈 후 학생의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학생
12. 수업 또는 행사에 지장을 일으킨 학생
13. 이상의 각 항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 ③ 특별교육 이수

1. 제61조 2항 각호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재범한 학생
2. 무단결석을 6일 이상, 가정 통신 또는 방문으로 출석 독려를 받고도 3일 이상 계속 결석한 학생
3. 타인의 물품이나 금전을 절취한 학생
4. 수업 또는 학교 행사를 거부 또는 방해, 동조한 학생
5. 학생 신분을 망각한 풍기문란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은 학생
6. 사회봉사 징계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
7.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시험 문제를 사전에 탐지했거나 절취한 학생
8.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 또는 타인을 위협할 목적으로 흉기를 소지한 학생
9. 이상의 각 항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 ④ 출석정지

1. 제61조 3항 각호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재범한 학생
2. 특별교육 이수 기간 중 개전의 정이 없는 학생

3.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손, 포옹, 입맞춤 등)을 한 학생
4. 교사의 정당한 지시 및 교육에 불응 또는 저항하여 타인의 교육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의 적법한 권한을 침해한 경우로 그 정도가 심한 경우
5.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 또는 타인을 위협할 목적으로 흥기를 소지한 학생
6. 이상의 각 항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 ⑤ 퇴학처분

1. 제61조 3, 4항 각호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재범한 학생
2. 고의적으로 학교의 비품을 습득 및 시설물을 파손 또는 절취한 학생
3. 타인의 물품이나 금전을 계획적으로 갈취 또는 강탈한 학생
4.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석이 무상하고 면학 분위기를 저해한 학생
  - 가. 무단결석 14일 이상
  - 나. 무단가출로 인한 결석 10일 이상
5. 성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
6. 고사에 불응할 것을 선동했거나 동조한 학생
7. 풍기문란 등으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켰거나 기타 퇴학 처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과오를 범한 학생
8. 따돌림, 폭력 등 학교 공동체의 평화적 관계를 깨뜨리는 일체의 행위 또는 타인을 위협할 목적으로 흥기를 소지한 학생
9. 성폭력으로 사회의 물의를 일으킨 학생
10. 이상의 각 항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제62조(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학교폭력과 관련되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제63조(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 범죄와 관련되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 제7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 제64조(학생생활규정의 개정)

- ①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외국어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직원협의회의 의결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4. 제65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 ③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65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회의 회의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 모임 등의 회의
  3. 교직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4.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 제65조(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 ①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대표 위원이 전체의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 학교의 규모의 따라 학생위원 참여 인원 수를 정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19조에 따라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 ⑨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⑩ 본 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회 대의원 2/3 이상의 동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학교장의 결재를 얻은 후 개정한다.
- ⑪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6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③ 대의원회의 결과 안내문에 명시하고 각 반 실장들에게 안내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내용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

제67조(연수 및 교육)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학생생활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전북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1]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제14조 관련)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차 : 주의 실시</li> <li>·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li> <li>·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li> <li>· 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li> </ul>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흥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li> <li>·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li> </ul> <p>※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분리 물품에 대해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p>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6개월	인성생활 안전부실	<p>※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 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p>
4	기타 학생생활규정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전북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2]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제26조 관련)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b>3호 지도</b>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 에도 불구하고 교육활 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 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u>교장실, 교무실 등</u>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 교사가 학교의 장에게 학생 인계 요청  ◦ 학교의 장 책임하에 관리자가 지정 장소 로 이동 및 지도  ◦ 단, 관리자 부재 시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생 분리 및 지도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b>4호 지도</b>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内外)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 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 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 리 및 자료가 필요한 경우	<u>교장실, 교무실 등</u> 학교의 장이 지정한 교내 별도의 장소 (60분 이내)	학교의 장이 학부모 에게 지도 시간과 사 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b>기타</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각은 수업 시작 후 5분으로 함</li> <li>- 분리 시간은 수업 종료 시까지(단, 학생이 수업 종료 전이라도 수업에 참여할 준비가 된 경우 학급으로 복귀 가능)</li> </ul>				
<b>유의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의적으로 교실 밖으로 분리 조치 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리 장소 선정 시 학생들의 선호 장소는 가급적 제외, 분리 공간의 환경과 안전(시설, 위험도구 등) 등을 확인</li> <li>- 학칙으로 적절한 분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 이상의 지나친 분리는 자제</li> <li>- 분리가 실시되는 동안 학생만 특정 공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함</li> </ul>				

##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규정(약칭: 학생생활규정) 관련 법령 발췌]

학생생활규정에 필요한 법령 일부분을 발췌한 것으로 이 이상의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9. 27.] [법률 제19738호, 2023. 9. 27., 일부개정]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5. 1. 29., 2011. 3. 18., 2012. 4. 20., 2012. 10. 29., 2020. 2. 25., 2022. 8. 30.>

1.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3. 교과·수업일수 및 고사와 과정수료의 인정
4.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 및 졸업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6. 수업료·입학금 기타의 비용징수
7.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학업 중단 예방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10.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05. 1. 29.>

③ 다음 각 호의 학교·학과·과정 또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학칙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각각 그 설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2. 15.>

1. 법 제5조에 따른 병설학교
2. 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또는 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3. 법 제48조에 따른 학과
4. 법 제49조에 따른 시간제 또는 통신제 과정
5. 기숙사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1. 3. 18., 2012. 4. 20., 2013. 2. 15., 2022. 8. 30.>

[제목개정 2011. 3. 18.]

## 1. 교육활동의 정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안전법 )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63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 19., 2012. 1. 26., 2015. 1. 20., 2021. 3. 23.>

1. “학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 다.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
  - 라.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
2. “학생”이라 함은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라 함은 고용형태 및 명칭을 불문하고 학교에서 학생의 교육 또는 학교의 행정을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교원 및 직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5. “교육활동참여자”란 학생 또는 교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학교장의 승인 또는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교직원의 교육활동을 보조하거나 학생 또는 교직원과 함께 교육활동을 하는 사람
  -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참여에 관하여 미리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통지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거나 학교장의 요청에 따라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교통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6.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학생의 책임 · 의무

### 세계인권선언

- 제29조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진다. 어떤 사람이든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온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러한 권리와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즉, 타인에게도 나와 똑같은 권리와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 그리고 민주사회의 도덕률과 공중질서, 사회전체의 복리를 위해 정당하게 요구되는 사안을 충족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에 의해서는 제한될 수 있다.
3. 그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유엔의 목적과 원칙에 어긋나게 행사해서는 안 된다.

###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 제2장 교육당사자 <개정 2007. 12. 21.>

- 제12조(학습자)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초 · 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②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12. 27.>  
[본조신설 2007. 12. 14.]  
[제목개정 2022. 12. 27.]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23. 4. 28.] [전라북도조례 제5256호, 2023. 4. 28., 타법개정]

-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3. 학생의 권리

####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전문개정 2007. 12. 21.]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개정 2021. 9. 24.>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등)**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시행 2023. 4. 28.] [전라북도조례 제5256호, 2023. 4. 28., 타법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전라북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유치원을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 또는 유치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과 퇴학 여부를 다투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의 교원과 같은 조 제2항의 직원, 「유아교육법」 20조제1항의 교원 및 같은 조 제2항의 직원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과 그 밖의 사람으로서 유아 또는 학생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학생의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체결·공포한 조약과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 제4조(책임과 의무)** ① 전라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학생의 인권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 등은 학생 스스로가 인권을 학습하고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 ③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는 학생의 교육활동에 적합한 교육시설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학생의 인권

###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방과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절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복지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정비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적정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8절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인권옹호관 및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교육활동의 녹화·녹음

### 통신비밀보호법

[시행 2022. 12. 27.] [법률 제19103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29., 2004. 1. 29., 2005. 3. 31., 2007. 12. 21., 2009. 11. 2.>

1. 환부우편물등의 처리 : 우편법 제28조·제32조·제35조·제36조등의 규정에 의하여 폭발물등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다고 의심되는 소포우편물(이와 유사한 우편물을 포함한다)을 개파하는 경우,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령을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하는 경우, 발송인의 주소·성명이 누락된 우편물로서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환부하는 때에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개파하는 경우 또는 유가물이 든 환부불능 우편물을 처리하는 경우
  2.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 관세법 제256조·제25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신서외의 우편물에 대한 통관검사절차
  3.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 : 형사소송법 제91조, 군사법원법 제131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3조·제44조 및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구속 또는 복역중인 사람에 대한 통신의 관리
  4.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 대한 통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84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자에게 보내온 통신을 파산관재인이 수령하는 경우
  5. 혼신제거등을 위한 전파감시 : 전파법 제49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혼신제거등 전파질서유지를 위한 전파감시의 경우
- ②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이하 “통신제한조치”라 한다)은 범죄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보충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국민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 12. 29.>
- ③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동전화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처리 및 수리 등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 1. 29.>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② 제4조 내지 제8조,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 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1. 12. 29.>

## 5.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약물 등

### 청소년 보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50호, 2021. 12. 7.,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2., 2013. 6. 4., 2014. 3. 24., 2016.

1. 6., 2016. 12. 20., 2017. 12. 12.,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라. 「공연법」에 따른 공연(국악공연은 제외한다)

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바. 「방송법」에 따른 방송프로그램(보도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주로 정치·경제·사회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신문은 제외한다), 특수일간신문(경제·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 분야는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인터넷신문(주로 보도·논평 및 여론을 전파하는 기사는 제외한다)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아.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정치·경제·사회·시사·산업·과학·종교 분야는 제외한다),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및 그 밖의 간행물

자.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 전자출판물 및 외국간행물(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제외한다)

차.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과 가목부터 자목 까지의 매체물에 수록·계재·전시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선전물

카. 그 밖에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청소년유해약물

1) 「주세법」에 따른 주류

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나. 청소년유해물건

- 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2) 청소년에게 음란성·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 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6. “유통”이란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방송·공연·상영·전시·진열·광고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와 이러한 목적으로 매체물 또는 약물 등을 인쇄·복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 6. 학생생활지도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6. 28.] [대통령령 제33566호, 2023. 6. 27., 일부개정]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와 관련하여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학업 및 진로
2. 보건 및 안전
3. 인성 및 대인관계
4.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6. 27.]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0조의3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7. 보호자의 책임

### 교육기본법

[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6호, 2021. 9. 24., 일부개정]

-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약칭: 공교육정상화법 )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타법개정]

-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 2022. 7. 1.]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27.>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9. 1.] [교육부고시 제2023-28호, 2023. 9. 1., 제정.]

-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8. 재심청구

### 초 · 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8조의2(재심청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8조의3에 따른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 제2항에 따른 심사 절차와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14.]

## 9. 학생의 징계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0. 10. 20] [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일부개정]

-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제18조의3(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이하 "징계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0. 9. 25] [대통령령 제31021호, 2020. 9. 22, 일부개정]

-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 3. 18.>

④교육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⑤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외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결석이 잦은 자
3.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

⑥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기간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3. 18.>

⑦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18.>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 3. 18.>